##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134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 우재준 · 서천호 · 김위상

조지연 · 조경태 · 박충권

고동진 · 김예지 · 김재섭

임이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에 체계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었음.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23년 CES에서 창조 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 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 를 거두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예산 외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어 왔으나, 이러한 운영 형태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대기업의 지원이 위축되었음. 반면,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 히 함으로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
-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 3.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 라 한다)
-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아니한 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 ①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	
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	
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u>&lt;후단 신설&gt;</u>	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u>수 있다.</u>
<u>&lt;신 설&gt;</u>	<u>1. 공공기관</u>
<u>&lt;신 설&gt;</u>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
	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u>&lt;신 설&gt;</u>	3.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
	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
	<u>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

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 자를 포함한다)는 창조경제혁 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항제8호에 따른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u>④</u> (생 략)